

주요국의 에너지정책동향

- 자유회와 공급안정성 확보 -

- 에너지경제연구원 -

요 약

- 86년을 고비로 국제에너지 시장은 주로 시장수급력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, 이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. 이같은 여건하에서 세계 주요국은 국내에너지 시장을 경쟁적으로 재편하는 한편, 위기에 대비한 공급안정성 확보를 주요에너지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.
- 국내시장의 경쟁도 제고정책은 주로 각종에너지 규제 의 제거 또는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. 그러나, 세계주요국 정부는 경쟁시장의 비효율적 측면을 감안하여 탐사개발, 기술개발 등 일부 정책부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.
- 그리고, 공급확보 대책의 초점은 주로 石油부문에 모아지고 있다. 이결과, 공급확보대책은 石油물량 확보 정책과 石油소비 관리정책으로 구분되고 있다. 지금까지 약속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시될 수 있다.
- 에너지시장의 경쟁도 제고
 - 경쟁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
 - 경쟁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역할 강화
- 에너지공급의 안정확보대책
 - 石油공급량 확보 대책
 - 石油비축확보와 위기사 유통계획
 - 石油의 자주적 개발
 - 石油購入先의 다변화
 - 에너지생산국과의 협력강화

- 石油 소비 관리 대책
 - 에너지 절약
 - 代替에너지 개발과 이용의 확대
- 여기서 세계 주요국의 특징적 에너지시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- 경쟁을 제한하는 에너지정책의 개선
 - 연료선택을 제한하는 Fuel Use Act 폐지(美國)
 - 알라스카産 石油수출폐지 해제(美國)
 - 熱竝合電力社, 독립계 電力생산업자가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할 때 경쟁입찰방식 허용(美國)
 - EC 지역내 에너지 시장의 통합(특히 天然가스와 電力)
 - 국영기업과 정부보유주식의 매각(英國, 프랑스)
 - 石油産業 규제완화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실시(日本)
 - 石炭産業의 합리화. 즉 石炭가격의 국제화와 국내 석탄생산 계획의 축소(西유럽, 日本)
- 경쟁기능을 보완하는 정부개입 강화
 - 로얄티減免, 세액공제범위 확대 등 石油탐사, 개발촉진제도 실시(美國, 캐나다)
 - 鑛區관리제도의 개선으로 미개발지역(대륙붕, 北極圈,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) 石油탐사 도모(美國)
 - 위기부담이 큰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
 - ㄱ. Clean Coal Technology 개발(美國)
 - ㄴ. 核發電시설과 폐기물처리 기술 지원(美國, 日本)

- State Severance Tax 감면
- EOR(Enhanced Oil Recovery) 생산에 대한 조세 감면
- 기타 논의 또는 추진중인 정책
 - WPT(超過利潤稅)의 철폐
 - 탐사비용(地質探鑛)의 가속회수
 - 探査, 개발 Tax Credit(稅額控除) 도입
 - 所有權 이전률(Transfer rule)의 철폐
 - 독립계 및 신규유전에 대한 高率의 광업권상각(15% ~27.5%) 적용
 - 정부의 채무보증제도 도입
 - 油價연동 로얄티 적용
 - 로얄티면제(royalty holiday)제도 도입(新規 油井에 국한)
- 2) 캐나다
- 주정부와 聯邦정부간 石油 및 가스 생산 稅制 협정 체결
 - Atlantic Accord(大西洋 協定) 1985. 2
 - 대륙붕 자원의 관리(적절한 로얄티 징수 제도)
 - Western Accord (서부 협정) 1985. 3.
 - 국내石油 시장 규제 철폐
 - 聯邦 石油, 가스稅 폐지
 - 캐나다/노바스코시아 협정(1986. 6)
 - 대륙붕 관리 체제의 개선
 - 稅入 배분 시스템
- 연방정부의 탐사, 개발, 생산 인센티브
 - PIP(Petroleum Incentive Programme)
 - 대륙붕 탐사, 개발 촉진
 - ETC(Exploration Tax Credit)
 - 油井當 C\$500萬 이상의 탐사지출에 대해 25%의 ETC 적용
 - 신규 로얄티제도 도입(중전의 10% 기초 로얄티와 40% 누진 로얄티 제도를 폐지)
- 연방정부의 탐사, 개발, 생산 세제 개혁
 - 소규모 생산업자를 위한 PGRT(Petroleum and Gas Revenue Tax)의 稅額控除 상향 조정(C\$500,000에서 C\$2,000,000로 1986. 5. 1부터 개시)
- 앨버타 주정부의 세제개혁
 - Royalty Tax Credit의 잠재적 상향조정
 - EDAP(Exploratory Drilling Assistance Programme)

- 시추비용의 50%를 로얄티에서 공제
 - DDAP(Development Drilling Assist. Prog.)
 - WSAP(Well Servicing Assist. Prog.)
 - GAP(Geophysical Assist. Prog.)
- Saskatchewan 州정부의 세제개혁
 - 로얄티 감면
 - 補修·유지 지출액의 40% 세액공제
 - EOR에 대한 로얄티 특별감면
 - 價格連動 로얄티 제도 도입
- (2) 價格自律化 조치
 - 1) 美 國
 - 原油 및 石油製品 가격 통제 철폐(1981. 1.)
 - 가격통제보다는 다양한 과세정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
 - 輸入課徵金(Oil import fee)의 징수 검토
 - 石油製品 소비세 추징 등
 - 生産地 가격규제의 완화
 - 신규가스田의 가격규제 철폐(1985. 1.)
 - 舊 가스田의 가격상한선 상향조정, 통일(FERC order 451)
 - 2) 캐나다
 - 原油價格 통제 완전 철폐(1985. 6.)
 - 天然가스 가격자유화(1986. 11.)
- (3) 鑛區管理制度의 개선
 - 1) 美 國
 - 일부 州정부는 鑛區管理制度의 완화 및 특혜 조치 실시 중
 - 休井의 plugging 기한연장
 - 90일→1년이상
 - 石油, 가스鑛區 電力料金 인하
 - 操業費 감소 및 한계유전의 수명연장
 - OCS(外邊 대륙붕) 5개년 개방계획 실시 중
 - 入札要件의 완화(最低入札價 \$25 / Acre 추진중)
 - 生産보너스의 지불연기(추진중)
 - OCS 매장량
 - 石油: 120億 배럴
 - 가스: 90 tcf
 - 연방 陸上鑛區權의 경쟁입찰 법안의 통과

- 電氣料金
 - 州政府가 규제
 - 산업 및 주택용으로서 경쟁가능하도록 충분히 낮은 平均費用 base로 계산
 - 산업 및 주택용 난방에 전력활용 유도

3. 에너지 절약

(1) 美 國

- 發電所 및 産業보일러의 石炭燃料 전환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(10%)
- 新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
- 石炭轉換 설비 연구에 대한 보조금지급(50%까지)

(2) 캐나다

- 주요산업부문에 대한 task force sys.에 의한 에너지

절약 계획

- Canada Oil Substitution Prg. ('80~'85)
- Canadian Home Insulation Prg. ('80~'86)
- NCAEI(National Conservation & Alternative Energy Initiative)
 - 연방-지방정부간 절약 및 代替 협정체결로, 연방, 지방정부간 정책 중복 제거
 - 직접적 incentive에서 소비자교육, 정보, 산업의 에너지 절약운동 및 지원활동으로 전환
 - 에너지管理, 절약기술 이전 및 정보교환
 - 에너지절약 및 再生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한 稅制 誘引
 - 에너지 효율성 감사 (Energy Bus Prg. 에 의한 에너지 절약 감사)

제2장 서 유럽

제1절 유럽경제의 단일화 추진

- 유럽제국은 향후 90년대에 유럽경제를 再活性化 시키고, 美·日에 빼앗긴 경제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EC가 주축이 되어 1992년까지 단일시장추진, 첨단기술의 공동개발 유럽내 시장 자율화, 기업합병·합작, 역내 시장을 위한 보호주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유럽단일화 조약(Single European Act)의 골자
 - 노동력의 자유이동과 상품교역 자유화에 필요한 장애요인들을 완전제거
 - 외환거래의 통제철폐를 비롯한 서비스 교역의 완전 자유화
 - 회원국간 附加價置稅 및 간접세 통일
 - 유럽통화단위(ECU) 표시의 화폐발행, 유통
 - EC 명칭의 단일여권 사용
 - 장기적으로 유럽의회를 구성하고 EC 단일대통령 선출 등
- 유럽단일화의 추진 현황
 - 1985. 6. EC 집행위의 域內 市場統合白書 제출

- 1986. 2. EC 회원국(12개국) 頂上들 헤이그 조약 서명
- 1988. 2. EC와 EFTA(유럽자유무역지대) “西歐시장통합” 선언

제2절 유럽의 에너지정책 목표

- EC의 에너지정책 목표(1985. 5월 EC 위원회 제안)
 - 지역의 공급국과의 유대강화, 개발도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
 - 지역내 에너지 시장의 통합(특히 천연가스, 전력)
 - 효율적 危機對策(석유비축, EC,IEA의 위기시 應對 계획)
 - 환경대책연구
 - 신에너지 기술 개발
 - 1983~1995년 에너지 효율 23% 향상
 - 石油수입 의존도 1/3 이하로 유지
 - 천연가스 소비축진
 - 발전부문에 석탄이용 확대
- 英國의 에너지정책 목표

-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가격
-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
- 수요측면에서 시장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전달
-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목표(제9차 국가종합계획 1984~1988년)
 - 1990년 에너지 수입의존도 51%, 석유의존도 35% 계획
 - 에너지절약, 대체에너지 이용의 확대
 - 원자력발전의 비율 1990년까지 68~84% 유지
- 西獨의 에너지정책 목표(에너지 계획 제3차 개정)
 -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 이용
 - 石油의존도의 축소
 - 에너지, 특히 석유공급원의 다원화
- 이탈리아의 에너지정책 목표(국가에너지 계획)
 - 石油 수입의존도를 1990년까지 51%로 축소
 - 發電용량은 1990년까지 8,700만kw로 확대
 - 에너지 절약 추진
 -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의 추진
 - 석유에너지 개발 도입의 촉진으로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

제3절 석유산업 자율화

〈英 國〉

- 政策기조 : 카르텔 감시이외의 정부 개입배제로 시장원리의 도입. 한편, 공정거래위원회, 獨占合併監視委員會의 권한 강화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유지
 - 1974. 에너지部(DOE)발족 및 에너지 절약자문위원회(ACEC)설치
 - 1979. 5. 가격위원회 폐지(가격인상 허가제 폐지)
 - 1985. 4 BNO(英國석유공사) 해체(개발부문 민간이양)
 - 1982. Britoil의 政府保有株 賣却

〈프랑스〉

- 政策기조 : 油價자유화 및 石油 수입 규제의 철폐
 - 1928. 石油業法 제정(국내기업 우선보호,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)
 - 1945. 價格法 제정(정유공장 출하가격, 소비자가격 규제)

- 1986. 石油輸入許可制 철폐
- 1986. 제품가격 규제 제도 폐지
 - '85. 1. Heating Oil을 제외한 제품 가격의 자유화
 - '86. 9. Heating Oil 小賣價 자유화

〈西 獨〉

- 政策기조 : 가격규제 없음. 그러나 不正去來를 엄격감시(연방카르텔 금지법 제정)

〈이탈리아〉

- 政策기조 : 통제 대상 제품수의 축소와 규제절차의 간소화
 - 1980. 1. 揮發油, 輕油, 煖房油, LPG 가격통제(上限價格 채용) 납사, 重質油는 가격감시
 - 1982. 8. 輕油, 煖房油, LPG 가격감시
 - 1985. 9. 중유 가격감시
 - 1986. 6. 揮發油 가격감시적용으로 가격설정 자유화

제4절 석탄산업 합리화

〈英 國〉

- 석탄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수립
 - 1946. 석탄산업 國有化法에 따라 국영화
 - 1947. 석탄공사(NCB) 설립(National Coal Board)
 - 석탄생산 독점
 - 民間企業 참여시 부분적으로 채굴권 허가
 - 1974. 석유계획수립(1985년 목표 생산량 13,500만톤)
 - 1981. 石炭燃燒助成 계획(Coal Firing Grant Scheme) 실시
 - (설비대체에 필요한 비용 25%까지 보조)
 - 1986. NCB를 British Coal (BC)로 명칭 변경
 - 1983. 石油産業法 개정
 - 廢鐵에 따른 社會的 費用에 대한 交附金과 赤字 交附金を BC에 대해 보조(1986. 5월까지)
 - BC의 설비, 운전자금 보조
 - 炭鑛移職者에 대한 보조

〈프랑스〉

- 88년말까지 국내탄의 경제성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65억프랑을 上限으로 일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아

올려 채산성이 없는 광산의 폐광을 추진하여 자립체제를 구축코저함.

- 1946. 석탄산업 국유화
 - CdF(Charbonnages de France) 설립
 - 광산의 규모 조정
 - 장비 현대화
- 1958년(6,000만톤 생산) 이후 생산량 감소 추세

<西 獨>

○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생산량 감축, 인원감축, 석탄보조금 축소등을 시행중임.

- 1963. 석탄합리화 추진
 - 석탄광의 단계적 조정, 高效率炭鑛 중심의 산업재편성
 - 소비자(발전소등) 稅制特惠(65), 補助制度 채택(66년)
- 1967. (독일석탄공업 및 산탄지역의 적응과 건전화 를 위한 법안)

- 1969 루르石炭株式會社(RAG) 설립

- 1983 石炭圓卓會議 개최
 - 정부, 석탄회사, 노동조합
 -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인
 - 석탄수요산업의 장기 계약 준수
 -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을 결정

제5절 국영기업의 민영화

<英 國>

- 민영화된 11개 公企業중 에너지기업은 3개
 - 영국석유공사(British Petroleum) : 79년 政府持

분을 일부매각 정부소유지분율을 50%미만으로 낮춤, 87년에 나머지 32%(약 48억 상당)도 매각 완료

- 영국석유회사(Britoil) : 82년 정부소유 48.8% 매각
- 영국가스공사(British Gas) : 86년 매각

- 민영화 추진방법

- 정부가 特別株主權(Special share 또는 Golden share)를 보유
- 외국인 주식참여의 상한선을 설정
- 종업원 및 少量株式 신청자에 대한 우대 : 종업원의 참여비율(영국석유공사 43%, 영국석유회사 72%, 영국가스공사 99%)

- 민영화에 따른 효과

- 株式의 대중화 : 株式投資人數는 79년 6백만명에서 1986년 18.5백만명으로 3배증가 추정
- 民營化 후 利益增大와 경영성의 개선

<프랑스>

- 대상기업 : 엘프(ELF-Aquitaine)석유회사

- 86년 정부소유 66.8% 지분을 매각(총 약 50억프랑)
- 매각주식의 10% 동사의 직원들에게 10% 割引價로 매각

- 민영화 추진방법 : 자문기구로서 민영화위원회 구성

- 민영화에 따른 효과

- 증권시장 규모확대('86년말 1조1천억프랑에서 92년에는 1조4천억프랑)
- 주식의 대중화 : 총 인구에 대한 주식투자인수의 비율은 현재 7.6%에서 1992년에 15%로 높아질 전망.

제3장 일 본

제1절 에너지정책방향

1. 經濟運營방향

○ 당면한 경제문화의 활성화

- 円高·디플레 극복을 위한 내수중심 경제성장 실현

-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, 민간설비 투자촉진, 규제완화, 인센티브제도부여

○ 국제적 視覺에서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추진

- 日本의 무역불균형 是正을 위해 21세기 중·장기·발전 견지에서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에서 국제적 조

화를 위한 수입촉진 구조로 방향전환함과 동시에
國際分業體制構築 추진

○ 力動的인 국제경제사회 구축에 공헌

-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시장개방, 제품수입의 촉진
- 경제력과 병행한 국제연구·개발협력·산업협력, 경제협력으로 주체성 확립

2. 에너지 政策의 기초

○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·資源政策推進

- 현재의 심한 財政壓迫下에서 시책의 효율화, 重點化를 도모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함.
- 석탄정책 추진방향은 86년말에 결정된 제8차 석탄정책에 의거하여 석탄광업을 集約化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킴.
- 석유정책의 추진방향은 石油需要 부진과 석유공급의 과다경쟁을 경험삼아 석유산업 체질강화를 도모함.
- 원자력정책 추진방향은 체르노빌사고를 거울삼아 원자력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함.
- 기타 : 에너지원의 다원화 추진, 核燃料 사이클 사업 추진, 에너지절약의 추진, 稀有金屬 자원의 안정공급 확보에 주력

○ 石油政策의 합리적 추진

- 석유산업 체질 강화 : 휘발유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기반 취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揮發油 유통판매업의 '공동운영 추진
- 低質 휘발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체계의 정비, 확대추진
- 비축추진 : 국가비축의 추진, 민간비축의 유지, LPG 비대증대에 주력
- 석유의 자주적 개발추진 : 현재 정체중인 석유의 자주적 개발의 추진과 석유개발 기술을 보다 향상시킴.

○ 石油依存度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에너지 절약 정책의 계속적 추진

- 原子力 發電의 안정확보 대책 실현
- 電源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 電源別 공급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電源공급 구성 실현

- 가스의 안정공급과 안전성 제고 : 요금의 장기안정을 위해 지방 도시가스사업의 天然가스化的 적극추진. 이를 위한 자금, 기술의 지원조치 강구

제2절 세부 에너지 정책

1. 石油·가스

○ 石油産業의 규제완화

- 日本通産省諮問委員會는 최근 국내石油産業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확정, 동 최종보고서를 通産省에 제출하였음. 통산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석유산업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임.
-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石油産業규제 철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| 주요 내용 | 실시년도(예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• 精油社 생산설비 증설계획에 대한 審議權 폐지 | 시행중 |
| • 휘발유 생산쿼터 가이드라인 폐지 | 88년말 이전 |
| • 暖房油, 低硫黃燈油, 비축 가이드라인 폐지 | 88년말 이전 |
| • 注油所位置 및 個數制限 폐지 | 89년말 이전 |
| • 정유공장 가동율에 대한 간섭 폐지 | 91년말 이전 |

- 본 계획의 수립목적은 국내석유산업의 건전한 育成에 있음. 日本石油業界는 石油製品수요감소 및 석유사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日本 통산성은 86년 가을부터 규제완화계획을 검토하여 왔음. 이 계획이 실시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석유사는 도산 또는 타석유회사로 흡수되어 日本석유업계의 개편이 예상됨. 또한 제품가격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을 것임.
- 한편 原油비축, 해외자본의 國內精油業界 참여, 石油製品수입규제는 계속될 것임. 이들 문제는 石油공급의 안정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.

○ 石油 關聯稅 개정

- 日本정부는 88회계연도(88. 4~89. 3) 石油관련 세제를 개정하였음. 주요 개정내용은 석유세 인상(種

價稅에서 種量稅로 전환), 관세인하, 에너지社會經濟 基盤投資促進稅制 신설 등임. 개정된 석유관련세

의 적용시점은 석유세, 관세의 경우는 금년 8월, 기타는 4월부터임.

日本の 石油關聯稅 개정 내용

| | 從 前 | 改 正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石油稅引上 | | |
| 課稅基準 | 種價稅 | 種量稅 |
| 課稅率 | | |
| • 原油 · 製品 | 평균 811엔 / kl | 2,040엔 / kl |
| • L P G | 평균 282엔 / t | 670엔 / t |
| • L N G | 평균 305엔 / t | 720엔 / t |
| 關稅인하 | | |
| 原油 · 製品 | 640엔 / kl | 530엔 / kl |
| L P G | 160엔 / t | 免稅 |
| 石油化學製品 · 가스제 조용납사 | 76엔 / kl | 46엔 / kl |
| 에너지사회경제기반 투자촉진 稅制 신설 | 에너지기반 高度化設備投資 促進稅制 適用時限 滿了 | 신설세제 2년간 적용 • 取得價格의 7% 稅額控除, 30% 特別償却 中 택 일 • 석유이용 高度化設備에 水素化 分解裝置, 高効率 가스分離裝置 추가 生産油田의 세제지원 • 投資額의 7% 稅額控除, 初年度 15% 特別償却 중 택일 |
| 石油供給안정화 투자 促進稅制 신설 | | 生産油田의 세제지원 • 投資額의 7% 稅額控除, 初年度 15% 特別償却 중 택일 |
| 에너지절약 · 석유대체에너 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| 적용 기한 만료 | 적용기한 2년 연장 - 取得價額의 7% 稅額控除, 30% 特別償却 中 택 일 - 恒溫式 貯藏槽 추가 |
| 海洋油田 · 가스田 廢鑛준비 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제도 | 적용 기한 만료 | 적용 기한 2년 연장 |
| 石油가스비축시설의 고정자 산세경감조치 | 적용 기한 만료 | 적용 기한 2년 연장 - 75% 세액공제 |
| 中間澆分 관세환급제도 | 적용 기한 만료 | 적용 기한 1년 연장 |

○ LPG업계의 집약화

- 日本 通産省 자원에너지청은 LPG元賣 26個社를 6 개그룹으로 집약하는 「共販會社 구상」을 제시하고 LPG업계 재편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임.

- 日本 정부가 LPG업계의 집약화를 적극 추진하는 목적은 元賣會社間的 과당경쟁을 막고, 산유국에 대한 가격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.
- LPG업계의 집약화 내용은 (1) 참여회사의 점유율

예상되고 있음.

3. 原子力

(1) 長期原子力開發 정책방향

- 日本의 원자력 기본정책은 에너지 供給의 安定確保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그 내용은 (1)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主種에너지로서의 原子力 개발 (2) 창조적 과학기술 육성차원으로서의 原子力開發 (3)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국제협력 추진임.
- 저유가 및 체르노빌사고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원전확대계획을확실히 추진할 방침임. 일본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86년말 현재 28%에서 2005년에는 45%로 늘어날 전망이다.

日本의 原電 개발 전망

| | 1986 | 1995 | 2000 | 2005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施設容量(MW) | 25,680 | 41,000 | 53,500 | 65,000 |
| 發電比重(%) | 27.8 | 35 | 40 | 45 |
| 1차에너지비중(%) | 9.5 | 13.4 | 15.9 | 18.0 |

- 또 日本은 경수로 고도화를 위해 안전성이 뛰어난 고유안전로, 고전환 경수로를 연구하는 한편, 放射性廢棄物의 안전처리, 核燃料週期的 확립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. 아울러 고속중식로 실용화에 대비하여 플루토늄 이용기술, 고속중식로 연구개발도 계속적으로

추진할 예정임.

- 한편, 日本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자국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國際協力과 지역간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

(2) 對開途國 原子力 협력 추진

- 日本은 아시아지역내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「原子力地域센터」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 최근 日本은 개도국과의 원자력기술 협력을 통해 원자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음.
 - 1988년에는 아시아제국의 원자력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협력내용·범위 등을 결정
 - 1989년에는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원자력발전시스템, 방사선치료, 농업분야 이용등 技術訓練計劃을 수립
- 同 센터의 설립목적은 원자력 선진국(제4위 보유국)인 일본이 자국의 인력·자금을 유효 활용하여 각국의 원자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, 원자력 협력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임.
 - 현재 인근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이용 및 연구개발이 진전되어 일본과의 협력 요청이 증대되어 왔음.
 - 日本은 동 센터의 설립을 통해 開途國의 기술인력을 초청하거나 日本의 기술인력을 각국에 파견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임.
 - 또한 日本은 각국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인력·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.

○ 아시아 各國의 原子力 개발 상황

| | 原電容量 | 건설중용량 | 추가건설 계획용량 | 협력대상분야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한 국 | 5,715MW | 1,900MW | 1,900MW | 안전 |
| 中 國 | - | 2,100 | 250 | 원자로 운전 훈련 |
| 인도네시아 | - | - | - | 시험용설비의 설치운전, 인력양성 |
| 말레이시아 | - | - | - | 농·공업, 의료분야의 방사선 이용 |
| 태 국 | - | - | 936 | 식품 가공 |
| 대 만 | 5,144 | - | 3,952 | |

제4장 중 국

제1절 에너지정책의 기초

- 에너지 생산증대정책 추진
- 해양유전탐사 및 개발
- 에너지 산업체에 대하여 政策規制緩和 및 자율권 부여
- 가공부문 가스보급 확대

- 中央政府가 배분하는 생산품 공급 및 배분 축소 (중앙정부 배분 : 65년 75%, 82년 51%)
- 생산목표 강요치 않고 시장수요나 收益性 등을 감안한 意思決定權 賦與
- 개인기업의 제한적 허용
- 石炭輸出은 석탄수출입공사(CNCIEC) 전담

(2) 金融 및 稅制

- 지방정부에서 개발·운영되는 탄광은 조세감면
- 탄광개발시 개발세 도입(지방탄광 증가 억제 및 안전 대책을 위한 투자 확보)
- 투자결정과 투자자금의 조달에 대해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였으나, 기업이 직접 銀行融資等에 의해 투자자금 조달 가능

(3) 價格制度

- 생산쿼터량 가격과 초과생산량 가격차이를 둠으로써 생산증대촉진(超過生産量 가격은 쿼터량 가격의 20% 범위내에서 책정)
- 소규모 탄광 운영권자에게 가격자율권 부여

제2절 세부 에너지 정책

1. 石油·天然가스

(1) 권한의 분권화

- 石油探査 權限 및 판매권 石油探査部(PED)에 대폭 이양
- 해양유전 개발시 외국기업과 탐사계약에 따른 권한 해양석유공사(CNOOC)에 이양
- 해양석유공사 자회사 설립 허용

(2) 企業自律權과 인센티브제 도입

- 각 기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생산쿼터 조정
- 생산쿼터 초과생산시 인센티브 지급
- 기업이 직접 이윤추구와 은행융자 등에 의해 투자자금 조달 가능
- 石油類 수출은 화학수출입공사(NCIEC) 전담
- 가스판매는 해양가스이용공사(COGUC) 전담

(3) 價格의 二元化

- 생산쿼터량 가격과 초과생산량 가격차이를 둠으로써 생산증대촉진(85년 가격 : 쿼터량 : \$3.7/b 초과량 : \$21/b)
- 생산쿼터량은 國內販賣, 초과 생산량은 수출

2. 石 炭

(1) 권한의 분권 및 기업자율권

- 인사관리의 자율권 부여

3. 電 力

- 투자시 중앙정부는 필요한 투자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및 기업체에서 자금 마련
- 지방정부와 기업체는 電力販賣, 채권발행, 상업차관 도입을 통하여 투자자금 확보

